

지정통계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시 30311-100	전화번호 731-6341)	전결규정 4 조 2항	국 장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시행일자	'85.3				
보루연한	준 영구				
보	도시계획국장	조흥부다당관	1985.3.29 도시계획국		
초	도시계획과장	기억 계획과장	1985.3.29		
판	종합계획과장	박규	1985.3.29		
기안책임자	강창구	'85. 3. 22	1985.3.29		
경유	과안참	고사제 2/6	1985.3.29		
수신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택지로성사업(공항이주단지)) 및 단지내 시설(도로, 녹지, 공용외청사, 어린이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참조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택지로성사업(공항이주단지)) 및 단지내 시설(도로, 녹지, 공용외청사, 어린이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부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택지로성사업(공항이주단지)) 및 단지내 시설(도로, 녹지, 공용외청사, 어린이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고시				
1.	강서구 외발산동 323-3번지 일대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택지로성사업(공항이주단지)) 및 단지내 시설(도로, 녹지, 공용외청사, 어린이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자 합니다.				
2.	본 사안은 도시계획법 제1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 및 의견접차를 거쳐 당시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제2차 속개회의(85.3.8)에 상정 심의가결된 사안입니다.				
가.	결정 및 지적승인로서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신설	일단외주택지로성사업및단지내 시설(도로)	강서구 외발산동 323-3번지	36,900		발송
"	" (녹지)	"	6,800		
"	" (공용외청사)	"	1,000		

신 설	입단외주 택지로 성사업 및 단기내	강서구 외발산	1,700			
	시설(어린이공원)	동 32-3 일대				
나. 도로 조성						
번호	시 점	종 점	폭 (M)	연장 (M)	면 적 (M ²)	비 고
1	공 항동 302-1	외발산동 313-2	10	387	3,870	소로 1-1
2	외발산동 329-9	공 항동 301-4	10	95	950	" 1-2
3	공 항동 39-6	외발산동 324-13	10	130	1,300	" 1-3
4	외발산동 314-7	" 324-14	10	79	790	" 1-4
5	공 항동 61-48	공 항동 58-2	8	76	608	소로 2-1
6	외발산동 338-3	외발산동 330-2	8	188	1,504	" 2-2
7	외발산동 314-6	" 338-1	8	151	1,208	" 2-3
8	" 314-13	" 319	8	218	1,744	" 2-4
9	" 317-3	" 321-3	8	112	896	" 2-5
10	" 324-9	" 321-3	8	115	920	" 2-6
11	" 319	공 항동 40-39	8	133	1,064	" 2-7
12	공 항동 39-6	" 40-37	8	52	416	" 2-8
13	" 300-1	" 37-6	6	56	336	" 3-1
14	" 304-3	" 301-3	6	123	738	" 3-2
15	" 301-1	" 302-2	6	79	474	" 3-3
16	" 301-5	" 302-1	6	61	366	" 3-4
17	외발산동 7-3	외발산동 325-3	6	81	486	" 3-5
18	" 327-3	" 산 7-3	6	97	582	" 3-6
19	공 항동 306-2	" 337-1	6	175	1,050	" 3-7
20	외발산동 330-2	" 331-1	6	70	420	" 3-8
21	" 330-2	" 334-2	6	105	630	" 3-9
22	" 313-3	" 328-3	6	232	1,392	" 3-10

528-결재
1981. 7. 9

번호	시	검	종	폭 (M)	연장 (M)	면적(M ²)	비 고	
23	외	밤산동 337-1	외	밤산동 337-1	6	109	654	소모 3-11
24	"	337-1	"	313-3	6	80	480	" 3-12
25	"	331-3	"	337-1	6	85	510	" 3-13
26	"	331-3	"	"	6	85	510	" 3-14
27	"	"	"	"	6	85	510	" 3-15
28	"	"	"	"	6	85	510	" 3-16
29	외	밤산동 335-3	외	밤산동 335-3	6	85	510	" 3-17
30	"	311-3	"	311-3	6	152	912	" 3-18
31	"	331-3	"	331-1	6	109	654	" 3-19
32	"	331-3	"	311-3	6	79	474	" 3-20
33	"	산5-1	공	향동 40-2	6	271	1,626	" 3-21
34	"	314-7	외	밤산동 314-16	6	85	510	" 3-22
35	"	311-1	"	317-3	6	128	768	" 3-23
36	"	320-4	"	314-3	6	99	594	" 3-24
37	"	321-3	"	322-6	6	96	576	" 3-25
38	"	322-3	"	323-3	6	113	678	" 3-26
39	"	314-1	"	324-3	6	122	732	" 3-27
40	"	323-1	"	323-3	6	95	570	" 3-28
41	"	323-1	공	향동 39-4	6	86	516	" 3-29
42	"	314-1	외	밤산동 320-1	6	87	522	" 3-30
43	"	322-1	외	밤산동 320-1	6	84	504	" 3-31
44	"	320-1	"	317-3	6	82	492	" 3-32
45	"	317-3	"	317-3	6	52	312	" 3-33

첨부 : 도시계획위원회 심.회의록 및 도면 1 부.

-4345

1985. 3. 29

제 2 안) 고 시 안

시사 1985. 3. 27 제 107호
담당자 김세재 상임 T. 박영관
관련

서울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 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 단지))의 단지내시설(도로, 녹지, 공용의정사, 어린이공원) 결정및 지적승인고시

1.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 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 단지)) 및 단지내 시설(도로, 녹지, 공용의정사, 어린이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와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였기 다음 각같이 이를 고시한다.

2. 관련 도서는 당시 주택개량과 및 강서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5. 3.

서울특별시 강

가. 결정 및 지적승인로서 : 제 1 안 '가' 항이 기 시행

나. 도로조성사업안 '나' 항 이 기 시행

(제 3 안)

1985. 3. 29

수신 : 건설부장관

발신 : 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제목 : 동 권

1. 계획시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 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 단지)) 및 단지내 시설(도로, 녹지, 공용의정사, 어린이공원)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도면표시와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1부. 끝.

(제 4 안)

1985. 3. 29

수신 : 강서구청장

발신 : 시장

참조 : 도시경비과장

제목 : 동 권

결재 1985. 3. 29

1.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를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표시와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통보하니 관계도서를 정미
 한후 시민봉 사실에 게재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토록 하기
 바라며 해지역 일대 건축용 개발행위 용지(도30여2-24.85.1.16)를 본청에 수령하시
 게재할것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표시 1부. 끝.

(계 5 안)

수신 : 항공건설사무소

발신 : 시장

제목 : 동 건

1.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를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표시와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통보하니 게재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토록 하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 및 도면표시 1부. 끝.

(계 6 안)

수신 : 수신처 참조

발신 : 과 장

제목 : 동 건

1.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택지조성사업(공항이주단지))을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표시와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처 : 주택개발과, 시설 계획과, 도로과, 종합건설본부장.

(계 7 안)

수신 : 총무처장관(시 : 공보관)

발신 : 시(과)장

제목 : 관(시)보 게재 의뢰

1. 다음과같이 관(시)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구분 : 고시

나. 관(시)보 게재건명 : 도시계획사업(일단외주택지조성사업(공항

이주단지) 및 단지내 시설(도로, 녹지, 공용 의정사, 어린이공원) 결정 및 지적승인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 .

첨부 : 고시문 사본 2 부 (1부) 끝 .

1985. 3. 29

85. 3. 8



도시계획위원회회의록

('85 제1차 위원회 제2차 속기 본회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4349

1. 일 시 : 85.3.8 15:00-17:30
2. 장 소 : 소회의실
3. 안 건 : 도시계획용도지구 (종위지구) 변경 결정 의
4. 참석위원

위원장	김진원
위원	이광토
"	오휘영
"	이동백
"	도철용
"	지홍원
"	장지남
"	장현익
"	김인식
"	최종무
"	이영환
"	최상근
"	이동
간사	도시계획과장
서기	도시행정계장 (종합계획계장)

5. 불참위원

위원	김형만
"	신동호
"	김원
"	김안계
"	김경동
"	여홍구
"	박상완

6. 기타참석 : 시설계획과장, 재개발과장, 주택개발과장, 상임기획단연구위원7명, 농축과실무자

회 의 결 과 요 약

- | | | |
|------|--|---------|
| 제21안 | 도시계획용도지구(용치지구) 변경 결정 | |
| | ○ 남산지구 일부 해제 | 가 결 |
| 제22안 |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구정사업) 및 단지내 세부시설 결정 | |
| | ○ 일단의주택지구정사업구획결정 | 가 결 |
| | ○ 단지내 도로결정 | " |
| | ○ " 녹지 " | " |
| | ○ " 공용의청사결정 | " |
| | ○ " 어린이공원결정 | " |
| 제20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변경 결정 | |
| | ○ 은수동 도로 신설 | 부 결 |
| 제23안 | 도시계획시설(시장, 자동차정류장) 결정 | |
| | ○ 무역센터내 시장결정 | 가 결 |
| | ○ 무역센터내 자동차정류장 결정 | " |
| 제24안 |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시장, 도로, 우수지) 결정 및 변경 결정 | |
| | ○ 용산시장내 용도지역변경(주거상업) | 소위원회의위임 |
| | ○ " 시장폐지 (3개소) | " |
| | ○ " 우수지폐지 (2개소) | " |
| | ○ " 유통업무설비결정 | " |
| | ○ " 도로폐지 | " |
| 제25안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변경 결정 | |
| | ○ 신정동 76-22일대 도로 변경 | 가 결 |
| | ○ " 576-3 " | " |
| | ○ " 588-12 " | " |

(제22안) 도시계획사업(입단의주택지조성사업) 및 단지내 세부시설 결정

○ 강서구 외발산동 323-3번지일대

· 입단의 주택지조성사업구역 : 135,000M²

· 도로 : 36,900M²

· ~~주택지조성~~ 800"

· 공용의청사 : 1,000M²

· 어린이공원 : 1,700"

간 사

제안설명(심의안에 의함)

이동위원

지난번위원회심의회시 대토변에 완충녹지대를 두기로 했는데 반영된것입니까?

간 사

반영했습니다. 시설녹지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동위원

계획인구 및 필지의 평균 규모는?

상임기획단

총 506세대이며 평균 필지 규모는 51.3평입니다.

이중재

이광포위원

본지역에는 2층건축도 가능합니까?

상임기획단

가능합니다.

이중재

이동위원

이주민은 농업입니까? 도시민입니까?

상임기획단

도시민이 많은편입니다.

이중재

이동위원

그렇다면 반드시 저밀도로 해야 한다는것 보다는 고밀도 계획이 어떻겠습니까?

상임기획단

개발시에 합동개발등의 개발 방식이 검토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중재

최상근위원

대토변에 50평 규모의 필지를 주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할것 같습니다

이광포위원

단독필지계획보다 대규모필지를 하도록 검토하는것은 어떻겠습니까?

김인식위원

본 계획은 서울시에서 사업 시행 하는것이 아니라 항공관리 공단의 김포공항 확장에 따른 이주단지를 조성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것입니다. 당초 택지조성지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주민의 대부분이 토지의 단독 소유를 원하고 있고 그렇게 해주기로 해서 이주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부서 APT, 연립주택을 제시했었다면 모르지만 지금 갑자기 변경해서 검토하게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 확장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계획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광호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입장을 이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원안대로 가결하되 본단지의 사업시행시 대규모필지 계획을 권장하는 본위원회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도록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입 동

동의 (가결)

(제20안)

도시계획시설 (도보) 결정 및 변경 결정

○ 은수동 2-4일대 도보 신설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현지 조사한 바 계획도토를 학교 우물 진입로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 편의를 위해 다시 도시 계획 결정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입 동

동의 (부결)

(제23안)

도시계획시설 (시장, 자동차 정류장) 결정

○ 삼성동 무역센터 부지내

· 시장 결정

· 자동차정류장 결정

시설계획과장

제안설명 (심의안에 의함)

이동위원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뒷편 도로를 확장하도록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요?

김인식위원

이미 확장 고시되었습니다.

이광호위원

원안대로 해도 좋겠습니다.

입 동

동의 (가결)



'85.1.29



도시계획위원회심의안

(제 1 차)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4354

목 차

I. '84 제 6 차 도시계획위원회 결과보고	3
II. '85 제 1 차 도시계획위원회, 봉의안산	5
1.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7
2.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	11
3.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 변경 및 결정	31
4.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	35
5.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중 도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39
6. 신문로 2 구역 10, 11 지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43
7. 신문로 2 구역 6 지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47
8. 마포로 1 구역 50 지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51
9.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55
10.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59
11.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	67
12.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	71
13.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변경결정	75
14.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정류장) 결정 (변경결정)	79
15. 도시계획시설 (공원) 신설결정	83
16. 도시계획용도지구 (풍치지구) 변경결정	87
17. 도시계획용도지구 (풍치지구) 변경결정	91
18.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결정)	95
19.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변경결정)	99
20.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결정)	103

21. 도시계획 용도지구 (통치지구) 변경결정.....	109
22.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세부시설결정.....	113
23. 도시계획시설 (시장, 자동차정류장) 결정.....	121
24.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유통업무설비, 시장, 도로, 유 수지)결정 및 변경결정.....	125
25.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131
26.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135
27.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로)결정.....	139
28. 도시계획시설 (공용외 집사)결정.....	143
29. 도시계획시설 (공용외 청사) 변경결정.....	147
30.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변경결정.....	151
31. 도시계획시설 (시장)결정.....	155
32. 도시계획시설 (자동차 정류장) 변경결정.....	159
33.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163
34.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	175
35.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179
36.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183
37. 도시계획시설 (도로, 학교) 변경 및 결정.....	187
38.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	191
39. 도시계획시설 (하수도)결정.....	195
40. 도시계획시설 (학교) 변경결정.....	199
41.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정류장) 변경결정.....	203
42. 소공구역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및 소공제 2 지구 제 3 개발자 지정사항변경.....	207
43. 도시계획사업 (주택개발재개발) 구역신규지정.....	211

의안 번호	제 22호	의 결 사 항
의결년월일	'85.3.8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및 단지내 시설신설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 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85. 3. 8

-113-

1. 귀결수준

우천시 도시계획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 공항이주단지) 및 단지내 시설 (도로, 녹지, 공용의청사, 어린이공원) 신설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시설조서

구분	명칭(시설)	위 치	면적(M ²)	비 고
신 설	도시계획사업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도시계획 기개구 리발산동 323-3번지일대	135,000	
"	도 로	"	36,900	
"	녹 지	"	6,800	
"	공용의 청사	"	1,000	
"	어린이 공원	"	1,700	

2. 제안사유 (입안취지)

김포국제공항 확장으로 철거되는 주민들의 정착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시행 및 단지내 세부 시설결정

3. 기 타

4.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 사항

가. 공고 및 공람

사 업 및 단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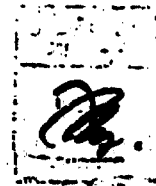
- 도시계획안 : 도시계획시설(도로, 녹지, 공용의청사, 어린이공원)신설결정
- 일자 및 게재신문 : '85. 2. 21 경향신문
- 의견청취기간 : '85. 2. 21 - '85. 3. 7
- 공람장소 : 도시계획과

나. 의견접수 및 처리상황 : 없음

5.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심사 (검토) 의견 :

의견없음

-115-



도 토 조 서 용 관 포

노 선 별	목 원	연 장	면 적	비 고
소 토 1 류	10 ㎡	691 ㎡	6,910 ㎡ ²	
소 토 2 류	8	1,045	8,360	
소 토 3 류	6	3,439	20,598	
기 타			1,032 -	
계		5,169	36,900	

번호	시점	종점	목원	연장	면적	비고
소토 1-1	지구계 (광토 2-54)	지구계 (광토 2-19)	10 m	387 m	3,870 m ²	
" 1-2	소 1-1	지구계	"	95	950	
" 1-3	소 2-7	지구계	"	130	1,300	
" 1-4	소 2-4	지구계	"	79	790	
소 계				619	6,910	
소토 2-1	지구계 (광토 2-54)	지구계	8	76	608	
소토 2-2	지구계 (광토 2-54)	소 1-1	"	188	1,504	
" 2-3	소 1-1	소 3-10	"	151	1,208	
" 2-4	소 1-1	소 3-34	"	218	1,744	
" 2-5	지구계 (광토 2-19)	소 2-4	"	112	896	
" 2-6	소 1-3	소 2-4	"	115	920	
" 2-7	소 3-34	지구계	"	133	1,064	
" 2-8	소 2-7	지구계	"	52	416	
소 계				1,045	8,360	
소토 3-1	소 2-1	지구계	6	56	336	
" 3-2	소 1-1	소 2-1	"	123	738	
" 3-3	소 1-2	소 3-2	"	79	474	
" 3-4	소 1-2	소 3-2	"	61	366	
" 3-5	소 1-2	지구계	"	81	486	
" 3-6	소 1-2	소 3-5	"	97	582	
" 3-7	소 1-1	소 2-2	"	175	1,050	

번호	시점	종점	목원	연장	면적	비고
소토 3-8	소 1-1	소 3-7	6 m	70 m	420 m ²	
" 3-9	소 1-1	소 3-7	"	105	630	
" 3-10	지구계 (광토 2-19)	소 2-2	"	232	1,392	
" 3-11	소 2-2	소 2-3	"	109	654	
" 3-12	소 2-3	소 3-18	"	80	480	
" 3-13	소 3-19	소 3-11	"	85	510	
" 3-14	소 3-19	소 3-11	"	85	510	
" 3-15	소 3-19	소 3-11	"	85	510	
" 3-16	소 3-19	소 3-11	"	85	510	
" 3-17	소 3-19	소 3-11	"	85	510	
" 3-18	소 1-1	소 3-10	"	152	912	
" 3-19	소 2-2	소 2-3	"	109	654	
" 3-20	소 2-3	소 3-18	"	79	474	
" 3-21	지구계 광토 2-19	소 2-8	"	271	1,626	
" 3-22	소 2-4	소 3-23	"	85	510	
" 3-23	소 1-1	소 2-5	"	128	768	
" 3-24	소 2-5	소 3-22	"	99	594	
" 3-25	소 2-5	소 3-24	"	96	576	
" 3-26	소 2-6	소 1-4	"	113	678	
" 3-27	소 2-6	소 1-4	"	122	732	
" 3-28	소 2-6	소 3-27	"	95	570	

번호	시점	종점	목원	연장	면적	비고
소토 3-20	소 2-3	소 3-18	79	474		

번호	시점	종점	폭원	연장	면적	비고
소토 3-29	소 2-6	소 2-7	6 m	86 m	516 m ²	
" 3-30	소 2-6	소 2-7	"	87	522	
" 3-31	소 2-6	소 3-30	"	84	504	
" 3-32	소 2-4	소 3-32	"	82	492	
" 3-33	소 2-5	소 3-34	"	52	312	
소 계				3,433	20,598	
합 계				5,169	35,868	
기각전제					732	
기타내도포					300	
소 계					1,032	
총 계					36,900	

-//4362

항공건설사무소

연일 30560-320
 수신 서울특별시청
 참조 도시계획국장
 제목 공동주택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회신

제	종합계획	도시계획	도시계획	1985. 3. 18.
처	국	국	국	공
처	국	국	국	공

1. 도시 30311-134(85. 3.13)호의 관련입니다.
2. 금포공항 확장계획에 거주하는 주민을 이주 계획한 집단이주

단지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동주택 보다는 단독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 대상자는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므로 영농장(농기부보관 및 창고등) 단독주택이 필요함.
- 공항주변(활주보에서 950M)이므로 고층건물은 제한되고 조속확립주택 항공기 소음의 피해가 커짐.
- 이주 대상자 529호중 23호를 제외한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이주 야기를 희망하므로 공동주택 건설시 집단 민원외 소지가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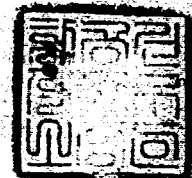
305. 578

529

항공건설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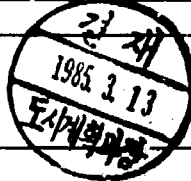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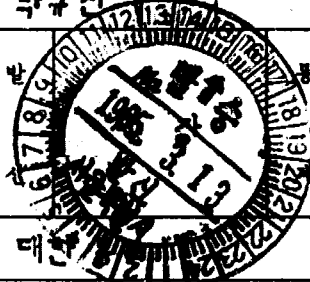



198년 3월 18일

제 4363



4363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시 30317-124	(전화번호)	전결규정 4	조 1 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과	장
시행일자	'85.3			
보존연한			김재 3/13	
보조기관	도시계획과장		합	
	종합계획계장			
기안책임자	강창구	'85.3	박규신	조
경유 수신 참조	항공건설사무소			
제목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한			
1. 건입 30560-152(85.2.8)호 외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결정 및 단지내 시설 결정, 요청에 대한 당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해 입지에 대하여 공동 주택으로 개발하 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의견이 있어 통보하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끝.				
				정서
				
				판인
				
				발송
				